

1998년 6월 26일 제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림.

I.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가스사업자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상향선과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치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신설된 과태료 처분규정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며,
- 또한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실효된 청문절차를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 제정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청문절차를 삭제하고 이의 신청시 도달주의 원칙에 입각하도록 개정함.

○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중에서 주요 개정 사항은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 가스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고시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

○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고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바탕으로 제정된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가스사업자 등의 위법사항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 최근 공동주택의 집단입지 및 대규모 택지조성과 첨단산업 단지의 유치 등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파주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강화된 것은 수익자 보호 및 인재에 의한 재난피해 등의 위 해방지 등 사업자 및 수익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써 환영할 만한 사항임.

○ 전체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관련 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한액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적용, 처분횟수에 의해 차등 부과토록하여 현행 조례와의 형평성을 감안, 부과토록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 또한 행정절차법이 '96. 12. 31일 법률 제5241호에 의해 제정, '98. 1.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에 있는 청문절차를 삭제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 참고로 동 조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붙임 1)을 보면

- '95년도 : 81건 11,700천원
- '96년도 : 40건 8,000천원
- '97년도 : 4건 2,500천원
- '98년도 현재 : 1건 300천원임.